

춘천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18나51871(본소), 2018나53969(반소) 판결 [계약금반환등
청구의 소 · 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시열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이중

변 론 종 결 2021. 7. 8.

판 결 선 고 2021. 8. 26.

제1 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5. 2. 선고 2017가단33963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057,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21. 8.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7,164,7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고, 제6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연 12%로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피고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3,000만 원과 원고 및 원고의 언니가 2017. 3. 1.부터 2017. 6. 29.까지 일한 대가인 1,6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그중 양도대금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 중 피고 패소 부분인 양도대금 3,000만 원에 관한 부분과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기한 반소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밑에서 5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라. 피고는 C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11. 4.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20노35).

마. 원고는 2017년 3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고, C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의 판매업무대행수수료를 피고 계좌로 지급하였다.

<표 1>

	구분	유통사 EDI 매출액	수수료율	중간판매대행수수료	공제액	실지금액	지급일자
1	3월	₩ 32,591,100	25%	₩ 8,147,775	₩ 918,891	₩ 7,228,884	04월 21일
2	4월	₩ 35,874,290	25%	₩ 8,968,573	₩ 1,143,517	₩ 7,825,056	05월 19일
3	5월	₩ 35,778,790	25%	₩ 8,944,698	₩ 1,221,680	₩ 7,723,018	06월 23일
4	6월	₩ 30,277,650	25%	₩ 7,569,413	₩ 725,931	₩ 6,843,482	07월 21일
합계		₩ 134,521,830		₩ 33,630,458	₩ 4,010,019	₩ 29,620,439	

바. 피고는 C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순매출액 10%의 금액과 그 외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순번	일자	피고 지급금액(원)	원고 반환금액(원)	내역
1	2017. 4. 21.	3,201,734		3월분 판매수수료
2	2017. 4. 27.		1,460,000	피고가 오계산이라 주장하여 반환한 금액
3	2017. 5. 19.	4,197,286		4월분 판매수수료
4	2017. 5. 22.	1,296,828		4월분 판매수수료
5	2017. 6. 1.		875,210	피고가 오계산이라 주장하여 반환한 금액
6	2017. 6. 23.	6,696,828		5월분 판매수수료
계		15,392,676	2,335,210	차액 : 13,057,466원

사.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을 2017. 6. 29. 제출하였고, 위 소장은 2017. 7.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제1심판결 3쪽 밑에서 3, 4째 줄 ”[인정근거]“ 부분의 증거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2호증, 을 제1, 2,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바꾼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판결 중 4쪽 7째 줄부터 10째 줄, 7쪽 밑에서 6째 줄부터 1째 줄까지는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함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은 해제 또는 취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다음과 같은 부당이득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인도받아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취한 반면 피고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4,849,976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표 3>

순번	날짜	내역	금액(원)
1	2017. 3. 23.	I 급여	1,200,000
2	2017. 3. 23.	J 급여	900,000
3	2017. 3. 23.	K 급여	360,000
4	2017. 3. 24.	I 급여(3월 미결제)	100,000
5	2017. 3. 24.	J 급여(3월 미결제)	50,000
6	2017. 3. 27.	국민연금	126,880
7	2017. 3. 29.	J 연장수당금	200,000
8	2017. 3. 31.	국민건강	184,080
9	2017. 3. 31.	고용보험	36,330

10	2017. 3. 31.	산재보험	39,110
11	2017. 3. 31.	국민연금	249,720
12	2017. 4. 1.	C 사은품 입금	440,000
13	2017. 4. 16.	C 사은품 입금	300,000
14	2017. 4. 21.	A 3월 매출 입금	3,201,734
15	2017. 4. 24.	E마트 행사 상품권 구입	100,700
16	2017. 4. 25.	J 급여	800,000
17	2017. 4. 26.	K 아르바이트	660,000
18	2017. 5. 2.	국민건강	112,360
19	2017. 5. 2.	산재보험	21,100
20	2017. 5. 2.	고용보험	36,990
21	2017. 5. 2.	국민연금	113,900
22	2017. 5. 6.	C 사은품 입금	50,000
23	2017. 5. 19.	A 4월 매출 입금	4,197,286
24	2017. 5. 19.	J 급여	800,000
25	2017. 5. 19.	K 급여	480,000
26	2017. 5. 22.	A	1,296,828
27	2017. 5. 23.	매장 전화요금 미납분 납부(3월)	22,020
28	2017. 5. 31.	산재보험	13,680
29	2017. 5. 31.	고용보험	9,820
30	2017. 5. 31.	국민연금	224,700
31	2017. 5. 31.	국민건강	164,520
32	2017. 6. 21.	C 사은품 입금	220,000
33	2017. 6. 23.	A 5월 매출 입금	6,696,828
34	2017. 6. 30.	산재보험	7,430
35	2017. 6. 30.	국민건강	373,180
36	2017. 6. 30.	고용보험	4,710
37	2017. 6. 30.	국민연금	76,070
38	2017. 7. 3.	K 6월 급여	480,000
39	2017. 7. 6.	J 아르바이트	500,000
	합계		24,849,976

원고는 재고물품 5,000여 만 원 중 2,314,800원을 소비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고 피고로 하여금 C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중 위 금액 상당을 공제당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7,164,776원(= 24,849,976원 + 2,31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순수익으로 받았다고 자인하는 11,151,150원에 대하여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여기서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이라 할 것이며, 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른바 운용이익의 경우,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지출한 비용 상당액에 관한 부분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비용(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 제외)은 C가 피고 계좌로 지급한 수수료에서 정산된 비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다거나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만일 피고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비용들은 당연히 피고가 부담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는 아래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취한 수수료 상당은 운용이익으로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재고감모금액 상당 부분

갑 제10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장의 2017. 6. 30. 당시 전산상 재고금액은 93,322,000원이나 실제 재고금액은 91,884,500원으로 그 차액(재고감모금액)이 1,437,500원인 사실, C가 그중 1,262,136원을 손해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공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고 금액의 차이가 원고 때문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가 수취한 수수료 상당 부분

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2017년 3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한 사실, C가 위 기간 동안의 판매업무대행수수료로 29,620,439원을 피고 계좌로 지급한 사실, 피고가 위 수수료 중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합계 13,057,466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갑 제10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에서는 순매출액의 25%를 판매업무대행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2015년 1월경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 전인 2017년 2월경까지 26개월 동안의 이 사건 매장의 순매출액은 평균 37,103,241원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한 약 4개월 동안의 평균 순매출액은 33,887,1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3,057,466원은 C가 판매업무대행수수료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로서, 이는 이 사건 매장에 있던 물건의 판매에 따른 것이어서 운용이익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한 기간 동안의 순매출액과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한 기간 동안의 순매출액의 차이 및 판매행위에 수반되는 제비용(부가가치세, 직원 인건비, 그 외 비용)은 모두 C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업무대행수수료에서 지출된 점, 원고가 이러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비용을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 주장, 입증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수취한 위 13,057,466원은 이 사건 매장에 있던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인하여 피고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반환해야 할 이득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상당의 금원은 원고와 원고의 언니인 L의 인건비와 수당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 외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13,057,4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1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1. 8.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지연손해금에 해당하고,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법정이자는 아니다).

5. 결 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한편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송종선, 판사 이은상